

[] 수거
미승인 소방용품등 [] 교체 표지
[] 폐기

위 치:
소 유 자:
품 명:
수 량:

귀하가 소유·관리·점유하고 있는 (형식승인을 받지 않은,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,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) 소방용품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7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거(교체·폐기)명령을 받은 소방용품입니다.

누구든지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.

년 월 일

소방청장 · 소방본부장 · 소방서장

직인